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계약예규 개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 시행규칙 시행일 : 2016. 1.15.

지방계약예규 시행일 : 2016. 1.20.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사 분야의 최저가낙찰제가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함에 따라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 국제표준에 맞게 시공실적, 기술능력, 시공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평가낙찰제로 전환하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이행 대가의 지급기간을 단축했다. 또한 지방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주계약자공동도급 시 주계약자가 선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부계약자에게 지급토록 하였다.

(편집자주)

○300억원 이상의 공사입찰의 경우 최저가낙찰제를 종합평가낙찰제로 전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 제15조제7항제1호나목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자치부 예규 제39호)

최저가낙찰제가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하여 덤핑낙찰, 공사품질 저하, 산업재해를 가중한다는 지적이 있어 300억원 이상의 공사입찰의 경우 종합평가낙찰제로 전환한다.

○계약이행 대가지급기간의 이내로 단축(7일 → 5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및 제4항)

예산의 조기집행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이행의 대가지급을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5일 이내로 단축하여 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고 지방예산을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계약자공동도급, 부계약자의 선금 지급시기 단축(7일 →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자치부 예규 제39호)

선금의 경우 구성원 각각에게 지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자는 부계약자에게 수령일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지급토록 하였다. 